산림청 공고 제2026 – 379호

산림청 임업서기보(산림환경)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산림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9월 1일

산 림 청 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4명)

임용예정직급 (직류)	지원코드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기관(근무지)
임업서기보 (산림환경)	**항공**	**14명**	**정년 적용**	**산림항공본부** (원주, 익산, 양산, 영암, 안동, 강릉, 진천, 함양, 청양, 서울, 울진, 철원)

※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임용기관인 산림청 이외의 기관으로는 5년간 전출제한, 산림청 내에서는 4년간 전보제한 됨.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직류)	담당 업무
항공	산림재난 대응	**임업서기보 (산림환경)**	ㅇ 산림재난 대응·관리 활동 ㅇ 산림재난 대응인력 관리·운영 및 행정에 관한 사항 ㅇ 산림재난 대응인력 교육 및 훈련 ㅇ 산불진화 장비 운영 및 관리 ㅇ 공중항공화물운반, 산악구조, 산불진화헬기 임무 지원 ㅇ 산림재난피해지 응급조치 및 현장조사 지원(위험지역·피해지역·점검, 대민 지원 등) ㅇ 기관 내 업무분장으로 정한 행정업무 및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10.13.) 기준]

<table>
<tr><th>채용분야</th><th colspan="3">직위별 요건</th></tr>
<tr><td rowspan="8">산림
재난
대응</td><td rowspan="8">자격증</td><td colspan="3">○ 아래 응시요건 중 1개 이상 갖춘 사람</td></tr>
<tr><td>자격①</td><td>기술사</td><td>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시설원예,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td></tr>
<tr><td>자격②</td><td>기능장</td><td>산림</td></tr>
<tr><td>자격③</td><td>기사</td><td>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종자, 임산가공, 시설원예, 자연생태복원</td></tr>
<tr><td>자격④</td><td>산업기사</td><td>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종자, 임산가공, 자연생태복원</td></tr>
<tr><td>자격⑤</td><td>기능사 + 경력(2년)</td><td>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임산가공, 목재가공, 펄프종이제조</td></tr>
<tr><td>자격⑥</td><td>-</td><td>나무의사</td></tr>
<tr><td colspan="3">* 관련분야 경력 : 조림, 숲가꾸기, 산림조사, 산림경영, 임업인 육성,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보호, 수목치료, 임도·사방사업, 산림휴양, 산림교육, 임산가공, 조경 등 산림청 소관 업무</td></tr>
</table>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자격증 요건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1개 선택하여 응시**

  예) 자격① / 자격②√ / 자격③ / 자격④ / 자격⑤ / 자격⑥

  → 응시자격요건을 각각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 경력의 계산 등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은 **근무한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발급하고 해당 기관의 직인이 찍힌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됨. 또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함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프리랜서, 자원봉사, 단체활동, 개인사업자 경력 등의 경우 당해 직위와 관련된 일정 규모·수준 이상의 연구·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의 일부를 인정

> ※ '개인사업자' 경력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명(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및 해당 기간 매출·소득액, 계약서 및 포트폴리오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의회 판단에 따라 일정 범위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 '자격증' 요건의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은 50%를 인정함(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다. 우대요건 및 가산점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 군 특수부대에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
(단, 임관을 위한 교육기간은 근무경력 미인정)

○ 직무분야 관련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산림보호학, 산림자원학, 산림환경학, 임학, 임산가공학, 조경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등 산림분야 관련 학위

○ 전산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중복불인정)

구분	대상 자격증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 컴퓨터활용 1급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기능사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워드프로세서(종전1급), 컴퓨터활용 2급

○ 초경량무인비행장치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중복불인정)

구분	대상 자격증
초경량 무인 비행장치	무인비행기·무인멀티콥터 실기평가조종자
	무인비행기·무인멀티콥터 지도조종자
	무인비행기·무인멀티콥터 조종자 2종 이상

○ 구조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중복불인정)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하는 응급구조사 1~2급

○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운전경력증명서 병행 제출, 면허정지시 미인정)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조회기간은 전체로 하여야 함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한 시험에 한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합격 발표된 시험만 인정

○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만점의 5% 또는 3%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부 상담센터)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 경력·자격증 인정범위는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참조

-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가능,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군 특수부대 경력] 특수부대 근무경력 중, 임관을 위한 교육기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① (육군) 육군특전사, 특공연대·대대(35특수임무대대 포함), 강습대대, 신속대응사단·여단(구.특공여단), 신속기동대대, 군사경찰특수임무대(구.헌병특수임무대), 대테러특수임무대,수색대대·중대, 정보중대, 제1산악여단, 기동대대·중대, 지상정찰중대

② (공군) 공군공정통제사(CCT), 공군항공구조사, 군사경찰특수임무대(구.헌병특수임무대), 7180부대

③ (해군) 해군정보부대(UDU), 군사경찰특수임무반(구.헌병특수임무대), 해군특수전전단[구.해군특수전여단(UDT)+구.해군해난구조대(SSU)]

④ (해병대) 해병대 수색부대(구.해병특수수색대), 해병대 유격대대, 해병대 기습대대, 해병대 공정대대, 해병대 지상정찰소대, 해병대 저격반, 해병대 군사경찰특별경호대

⑤ (국방부 직할) 정보사,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1・24특임대대

⑥ (기타 특수부대) 그 외 특수부대 근무경력자

- [학위]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함

○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등급별 차등 우대)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등급별로 차등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4명 이상 선발단위에만 적용되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음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대상자는 본인이 해당되는 가점적용비율을 직접 확인하여 원서접수 시 둘 중 하나를 선택 제출)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⑦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

※ 의사상자 가점은 10명 이상 선발단위에만 적용되며,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아래 의사상자는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대상자는 본인이 해당되는 가점적용비율을 직접 확인하여 원서접수 시 둘 중 하나를 선택 제출)

1. 만점의 5% 가산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2. 만점의 3% 가산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직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실기(체력)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육상단거리, 육상중거리, 사낭나르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 5과목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면접시험 대상자로 결정하되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 실기(체력)시험 시행 시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
  - 실기시험 응시생 중 무작위로 응시생의 5%를 선정하여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 복용 여부 검사
- 러닝화(스파이크, 스타팅 블록 등 사용불가), 장갑 등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 장구는 일체 사용 불가
- 시험과목 및 평가기준(100점 만점 기준)

과목 \ 배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육상 단거리 (100m)	12.5초 이내	12.6초 ~ 13.0초	13.1초 ~ 13.5초	13.6초 ~ 14.0초	14.1초 ~ 14.5초	14.6초 ~ 15.0초	15.1초 ~ 15.5초	15.6초 ~ 16.0초	16.1초 ~ 16.5초	16.6초 이후
육상 중거리 (1,200m)	3분50초 이내	3분51초 ~ 4분6초	4분7초 ~ 4분22초	4분23초 ~ 4분38초	4분39초 ~ 4분54초	4분55초 ~ 5분10초	5분11초 ~ 5분26초	5분27초 ~ 5분42초	5분43초 ~ 5분59초	6분0초 이후
사낭 나르기 (무게20kg, 50m)	16.5초 이내	16.6초 ~ 17.5초	17.6초 ~ 18.5초	18.6초 ~ 19.5초	19.6초 ~ 20.5초	20.6초 ~ 21.5초	21.6초 ~ 22.5초	22.6초 ~ 23.5초	23.6초 ~ 24.5초	24.6초 이후
팔굽혀 펴기 (1분)	80회 이상	79회 ~ 75회	74회 ~ 70회	69회 ~ 65회	64회 ~ 60회	59회 ~ 55회	54회 ~ 50회	49회 ~ 45회	44회 ~ 40회	39회 이하
윗몸 일으키기 (1분)	65회 이상	64회 ~ 62회	61회 ~ 59회	58회 ~ 56회	55회 ~ 53회	52회 ~ 50회	49회 ~ 47회	46회 ~ 44회	43회 ~ 41회	40회 이하
비고	· 어느 한 과목이라도 과락(2점)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탈락(이후 타 과목 응시 불가) · 5과목 점수 합계가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 육상단거리와 사낭나르기 기록은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육상중거리 기록은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를 버림									

다. 면접시험

-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⑤ 직무관련 능력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실기시험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9.1.(화) ~9.11.(금)	'26.9.7.(월) ~9.11.(금)	'26.9.23.(수)	'26.9.30.(수)	'26.10.1.(목)	'26.10.12.(월) ~10.13.(화)	'26.10.23.(금)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실기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실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실기시험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산림청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6. 9. 7.(월) ~ 9. 11.(금) 9:00 ~ 18:00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응시원서는 붙임3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우) 2635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구재로 229,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 채용담당(임업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문의전화 : 033-769-6008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원서 1부	ㅇ 별지서식 제1호
	이력서 1부	ㅇ 별지서식 제2호
	자기소개서 1부	ㅇ 별지서식 제3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 별지서식 제4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ㅇ 별지서식 제7호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응시자격요건 충족 및 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 증명서 1부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필요 (조회기간 : 전체)
	전문대학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등 확인용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논문 요약서 사본 1부	ㅇ 별지서식 제5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증빙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정부24, 건강보험공단,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까지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6. 11월초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9 안내 및 참고사항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단, 실기시험의 경우 우천 등 기상여건에 따라 응시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시, 개인별 유선연락을 통하여 실기시험 일정 변경될 수 있음(최초로 공고한 매체를 통하여 변경 공고 병행 실시))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 사항은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033-769-6008)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직류)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기관(근무지)
항공	산림재난 대응	임업서기보 (산림환경)	14명	산림항공본부

주요 업무	○ 산림재난 대응·관리 활동 ○ 산림재난 대응인력 관리·운영 및 행정에 관한 사항 ○ 산림재난 대응인력 교육 및 훈련 ○ 산불진화 장비 운영 및 관리 ○ 공중항공화물운반, 산악구조, 산불진화헬기 임무 지원 ○ 산림재난 피해지 응급조치 및 현장조사 지원 (위험지역·피해지역·점검, 대민 지원) ○ 기관 내 업무분장으로 정한 행정업무 및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 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집행관리능력, 조정능력, 전문성, 대인관계
필요 지식	○ 산림재난 대응·관리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지식 ○ 산림재난 관련 법령·규정 등에 관한 지식 ○ 산림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응시 자격 요건	자격증	○ 아래 응시요건 중 1개 이상 갖춘 사람

자격①	기술사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시설원예,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자격②	기능장	산림
자격③	기사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종자, 임산가공, 시설원예, 자연생태복원
자격④	산업기사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종자, 임산가공, 자연생태복원
자격⑤	기능사 + 경력(2년)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임산가공, 목재가공, 펄프종이제조
자격⑥	-	나무의사

* 관련분야 경력 : 조림, 숲가꾸기, 산림조사, 산림경영, 임업인 육성, 산림병해충방제, 산림보호, 수목치료, 임도·사방사업, 산림휴양, 산림교육, 임산가공, 조경 등 산림청 소관 업무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군 특수부대에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 (단, 임관을 위한 교육기간은 근무경력 미인정) ○ 전산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 초경량무인비행장치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 구조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응급구조사 1~2급) ○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운전경력증명서 병행 제출, 면허정지시 미인정)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 ○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공고문 참조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ㅇ 응시수수료 - 9급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ㅇ 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산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ㅇ 별도 양식 없으며 A4 요약서 1매 + A4 5매로 작성 (총 6매 이내)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필수서류	ㅇ 자필 서명 필수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7호) : 필수서류	ㅇ 자필 서명 필수
7.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필수서류	ㅇ 응시자격요건 충족 및 우대요건 해당 자에 한함
8. 주민등록초본 1부 : 필수서류	ㅇ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구 분	내 용
9.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근무한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발급하고, 해당 기관의 직인이 찍힌 경력(재직) 증명서에 한하여 경력 인정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ㅇ 해당자에 한함 ㅇ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10.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부	ㅇ해당자에 한함 ㅇ운전경력증명서 제출 필요(**조회기간 : 전체**) ※ 국내자격증에 한하며, 면허정지 시에는 우대요건 불인정
11. 전문대학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ㅇ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1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13.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14. 의사상자 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15. 가족관계 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별지서식 제1호>

(앞 면)

응 시 원 서 (원본)

산 림 청 장 귀하

본인은 산림청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 시 원 서(원본)				
응시직급(지원코드) 및 분야		임업서기보(항공) / 산림재난 대응 분야		
응시자격		□ 자격① / □ 자격② / □ 자격③ / □ 자격④ / □ 자격⑤/ □ 자격⑥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임업서기보(산림환경직류))시험			
응시직급(지원코드) 및 분야		임업서기보(항공) / 산림재난 대응 분야	
응시자격		□ 자격① / □ 자격② / □ 자격③ / □ 자격④ / □ 자격⑤/ □ 자격⑥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근무예정기관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① **응시직급(지원코드)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직급과 지원코드, 채용분야 기재

(예)임업서기보(항공) / 산림재난 대응 분야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선택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⑥ **정부수입인지**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서식 제2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산림재난 대응 분야	응시 자격 요건	☐ 자격① / ☐ 자격② / ☐ 자격③ / ☐ 자격④ / ☐ 자격⑤ / ☐ 자격⑥	성명	

2. 응시자격

※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 선발에정직위에 필요한 응시자격만으로 서식 구성)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ㅇㅇㅇㅇ (ㅇㅇ과)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51.~12.31.(질병휴직)	과장 (4급)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3. 우대요건

※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 시험실시기관은 직무 특성에 따라 필요한 우대요건을 정할 수 있음)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ㅇㅇㅇㅇ (ㅇㅇ과)	18.1.1 ~ 20.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7.5.1~18.1.1.(육아휴직)	과장 (4급)	*운전직의 경우 '운행차종(인승)'기재 예) 대형버스(45인승)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자격증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학위	*국제통상학*	*'00.00.00*	*국제통상학 석사*

4. 가산점

※ 해당 없을시 삭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시행기관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종류·구분	가산점 비율	증명서 발행일	증명서 발행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우대사항란의 경력은 응시자격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만 작성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 작성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의 응시자격 요건 중 선택

【 응시자격 】 : 해당사항에 한하여 작성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관련분야 경력 요건 중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13년의 경력이 있을 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8년의 경력은 '나. 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5년의 경력은 '다. 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 통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 비전임 및 시간제 근무의 경우, 응시자의 주당 근무시간 기입 누락 등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한 경력이 경력요건에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을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비전임 및 시간제 근무의 경우, 응시자의 주당 근무시간 기입 누락 등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한 경력이 경력요건에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을 제외한 관련분야 자격증만 작성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학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학위종류・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별지서식 제3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5매(총 6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별지서식 제5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성 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학위개요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심사 년월일 : ○ 지도교수 :

주요내용 요약
Ⅰ. 연구목적 1. 가. 1) 가) (1) (가) Ⅱ. 연구내용 Ⅲ.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6. . .

응시자 : (인)

※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별지서식 제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산림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논문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산림청장 귀하